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지권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09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1월 11일

발 의 자 : 정지권, 김호진, 성중기,
송도호, 송아량, 이광호,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의원(10명)

1. 주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여객의 준수 사항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를 것,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여객자동차의 안전과 위생·방역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확대하고 자발적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 행정지도가 실시되었고, 또한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에서의 안전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은 여객(이용자)의 준수 사항이고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임.

따라서 여객자동차의 안전과 위생·방역에 대한 여객의 인식을 확대하고 자발적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안전과 위생에 관한 여객의 준수 사항을 추가하도록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

다. 기타 : 없음

4. 이송처

- 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나. 정부: 국토교통부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시는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차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그 내용은 여객과 차량의 안전 및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탑승객의 승차 또는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분야 방역 강화를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 행정지도가 실시되었고, 또한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에서의 안전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은 여객(이용자)의 준수 사항이고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 의무와 흡연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의 준수 사항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를 것,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여객자동차의 안전과 위생·방역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확대하고 자발적 준수 또한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202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